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,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3.9.14. 공포, 2024.3.15.시행)됨에 따라,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,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,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 위탁기관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의2)

- 1)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및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
- 2)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함

나.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7조 내지 제10조)

- 1)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해촉 사유를 정함
- 2)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함
- 3)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,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

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실시 기록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·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1. 「치매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
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·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

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·기능)”을 “(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법 제14조제3항제3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”을 “고독사 예방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·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.

1. 교육부차관
2. 행정안전부차관
3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4. 고용노동부차관
5. 여성가족부차관
6. 경찰청차장
7. 소방청차장

④ 해촉(解觸) 등으로 인해 위원의 자리가 비게 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.

③ 협의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,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

당·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.</u> <u>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실시 기록</u> <u>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</u> <u>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·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</u> <u>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</u> <u>1. 「치매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</u> <u>2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·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</u>

제7조(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
· 기능) ① 법 제14조제1항에
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(이하
“고독사예방협의회”라 한다)는
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고독사예방협의회 위원장(이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
의2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
응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
업무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
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
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한국
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
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
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
한다.

제7조(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
성)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
따른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
관·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
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
원을 말한다.

1. 교육부차관
2. 행정안전부차관
3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4. 고용노동부차관
5. 여성가족부차관
6. 경찰청차장
7. 소방청차장

<삭 제>

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보건
복지부장관이 되며, 고독사예방
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
람이 된다.

1.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
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고용노
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경
찰청장 및 소방청장

2. 시·도지사

3.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
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
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
는 사람

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
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
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
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
觸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법 제14조제3항제3호-----

-----.

③ 고독사 예방 협의회(이하
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
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해촉(解觸) 등으로 인해 위
원의 자리가 비게 된 경우에 새
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
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

⑤ 위원장은 고독사예방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고독사예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

2.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
3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4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협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⑦ 고독사예방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예방협의

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
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8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협의
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업무
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
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
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
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
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
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
인정할 때에 협의회의 회의를
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
다.

③ 협의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
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
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
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
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

제8조 (생략)

제11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24